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65
----------	------

발의연월일 : 2017. 2. 10.

발의자 : 최연혜 · 곽대훈 · 김정재
정운천 · 김명연 · 경대수
정태옥 · 백승주 · 김도읍
조훈현 · 강효상 · 이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가스사고나 전기사고와 달리 열사용기자재사고 발생 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 조사 및 사고의 원인 규명이 미흡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이나 안전교육 등 효과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사고발생 사실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 ·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78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보고·조사)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내용, 경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사망 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손괴(損壞)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보고·조사) ①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u></p> <p><u>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내용, 경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보고하여야 하며,</u></p> <p><u>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u></p> <p><u>1. 사망 사고</u></p> <p><u>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u></p> <p><u>3. 화재 또는 폭발 사고</u></p> <p><u>4. 그 밖에 검사대상기기가 손괴(損壞)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u></p> <p><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에너지공단</u></p>

	<p><u>으로 하여금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u></p>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8조(과태료)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